

조선왕릉 ‘능지’ 연구

- 태조에서 중종능까지 -

A Study on ‘Neungji’ of Joseon’s Royal Tomb

- From King Taejo to King Jungjong -

유 지 복 (Yu, Ji-bok)*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맺음말 |
| 2. 조선왕릉 능지 현황 | <참고문헌> |
| 3. 능지 개요 | |

< 초 록 >

왕과 왕비가 죽은 뒤 왕릉에 안장되기까지의 과정은 ‘등록’과 ‘의궤’의 형태로 남았다. 왕릉에 묻힌 뒤에는 능관을 임명하여 각종 제례와 수호의 임무를 맡겼는데, 이에 관한 절차와 규칙의 진말을 기록해놓은 것이 바로 ‘능지(陵誌)’이다.

이 글은 현재 남아있는 52종의 능지 가운데 태조의 『건원능지(健元陵誌)』로부터 성종과 중종의 『선정릉지(宣靖陵誌)』까지 20종의 능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방법은 서문과 발문을 통해 각 능지의 작성연대와 작성 경위를 파악하고, 목록과 특이사항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아울러 능지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이 연구는 기록물로서의 능지의 성격을 파악하게 해주는 한편, 왕릉의 운영에 있어 지침서의 역할을 했던 능지의 가치를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要語: 陵誌, 王陵, 陵官, 李王職, 祭禮, 守護, 기록물

*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연구실 전임연구원(smrcj@hanmail.net)

접수일: 2013년 9월 4일 최초심사일: 2013년 9월 5일 심사완료일: 2013년 9월 28일

<ABSTRACT>

The processes from the deaths of kings and queens to their burials in royal tombs are recorded in the forms of 'Deungrok' and 'Uigwe'. After the burials, tomb officers were appointed and they undertook the tasks to protect the tombs and perform various ancestral rites. All the procedures and forms about such tomb officers' appointment and tasks are recorded in 'Neungji(陵誌)'.
This study examined twenty Neungjis, from the *Geonwonneungji*(健元陵誌) of King Taejo to the *Seonjeonneungji*(宣靖陵誌) of King Seongjong and King Jungjong, out of existing 52 Neungjis. This research found out the times and backgrounds each Neungji's were made out, and provided the lists and particulars of each Neungji. The emphasis of this study was put on providing basic information for the future full-scale studies about Neungji.

This study will help understand the nature of Neungji, as a documentary, and make a chance to evaluate the value of Neungji that functioned as a guide for royal tomb management.

Key words: Neungji, royal tomb, tomb officer, Yiwangjik, ancestral rite, records, documentary

1. 머리말

왕과 왕비가 죽은 뒤 왕릉에 안장되기까지의 과정은 ‘등록’과 ‘의궤’의 형태로 남았다. 왕릉에 묻힌 뒤에는 국가에서 임명한 능관이 각종 제사를 관장하고 능역을 수호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이에 관한 절차와 규칙의 전말을 기록해놓은 것이 바로 ‘陵誌’이다.

현재 약 52종의 능지가 각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능지에는 대부분 서문과 발문이 실려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능관의 처소였던 각 능의 齋室에는 예로부터 능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능지는 능역을 지키는 절목과 제사를 치를 때의 절차를 그때그때 기록해놓은 것으로, 왕릉 수호와 제사 담당이 주요 임무였던 陵官에게 있어 자신의 소임을 차질 없이 시행해줄 필수 지침서였다.¹⁾

능지는 대부분 祭享과 守護에 관한 내용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밖에 능역의 위치 및 능역 안의 건물들의 규모, 왕릉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요소 등도 능지 구성의 기본 항목을 이룬다. 또한 온전한 체제를 갖춘 능지의 경우 맨 앞에 으레 능의 주인인 왕과 왕비의 생애를 기록한 誌文·冊文 등의 항목을 두어 왕릉 기록물로서의 권위를 갖추고 있다.

능지에는 이런 요소 외에도 능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안과 이에 대한 처분 등 현장감 넘치는 당시의 기록들이 생생히 묘사되어 있다. 또한 국가에서 작성한 공식 기록에서 볼 수 없는 내용들도 상당 부분 갖추고 있어 정사를 위주로 편찬된 사료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국가 기록물에 버금가는 가치를 지닌 52종의 능지는 이처럼 사료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님에도 불구하고 현재 능지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 기반이 매우 미약한 상태다. 근래에 왕릉 관련 문헌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등록·의궤 등의 문헌과 함께 능지를 대상 자료로 다룬 서지학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었다.²⁾ 이는

1) 『宣靖陵誌』(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文K2-4437), 『宣陵瞻錄序』(金宗壽 撰). “齋之有瞻錄古也, 有陵寢則守護之節目存焉, 有祭享則將事之儀禮具焉, 凡爲陵官者, 不可一日不講習也.”

2) 崔志善, “조선시대 왕릉 관련 문헌의 서지적 연구,”(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大學院, 2007).

능지를 연구대상으로 삼은 유일한 예로, 조선 왕릉 관련 문헌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다만 서지사항과 목록을 약술한 형태에 그쳐 각 능지의 내용을 개관할 정도의 깊이에 이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능지를 텍스트의 일부로 삼아 역사적 사건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 이들은 모두 숙종대 ‘단종 복위’를 주제로 魯陵誌·莊陵誌 등의 내용을 주요 근거로 삼아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이 역시 능지 자체를 텍스트로 삼은 연구와는 거리가 있다.³⁾

근래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조선왕릉에 대한 분야별 종합연구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학술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어 조선왕릉의 학술적 연구에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다.⁴⁾ 능지에 초점을 둔 연구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능지를 다루고 있어 현황파악에는 어느 정도 유익한 바가 있다. 이밖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서는 2009년부터 10년 계획으로 陵園誌 역사사업을 진행하여 태종의 『獻陵誌』로부터 명성황후의 『洪陵誌』에 이르기까지 12종의 능지를 역주 대상으로 삼아 그 결과물이 현재 4책 간행된 바 있다.⁵⁾ 이는 능지의 본격적 연구를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현재 남아있는 52종의 능지 가운데 태조의 『健元陵誌』로부터 성종과 중종의 『宣靖陵誌』까지 20종의 능지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연구방법은 서문과 발문을 통해 각 능지의 작성연대와 작성 경위를 파악하고, 목록과 특이사항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아울러 능지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진단책으로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이 연구는 기록물로서의 능지의 성격을 파악하게 해주는 한편, 왕릉의 운영에 있어 지침서의 역할을 했던 능지의 가치를 조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 3) 李根浩, “16~18세기 ‘단종복위운동’ 참여자의 복권 과정 연구,” 『史學研究』 第83號(2006), 115-155. ; 이현진, “조선후기 단종 복위와 충신 현창,” 『史學研究』 第98號(2010), 41-89. ; 윤정, “18세기 ‘단종제신’ 포장의 확대와 ‘生六臣’의 성립,” 『역사문화연구』 제36집(2010), 41-77.
- 4)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보고서(Ⅰ)·(Ⅱ)·(Ⅲ)』(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2011, 2012).
- 5) 장서각 편, 김덕수 역주, 『譯註 獻陵誌』(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 장서각 편, 김덕수 역주, 『譯註 莊陵誌續編』(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1). ; 장서각 편, 김동석·이태희 역주, 『譯註 光陵誌』(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 장서각 편, 유지복 역주, 『譯註 昌陵誌』(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2. 조선왕릉 능지 현황

현전하는 조선시대의 능지는 대략 52종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숙종 말엽인 18세기 초반에 작성된 능지가 가장 이른 예이며 대부분 후대에 작성된 것이다 (<표 1> 참조). 조선 왕릉 42기 중 8기를 제외한 왕릉이 모두 능지를 갖추고 있다.⁶⁾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22종, 국립문화재연구소에 27종, 규장각에 3종이 각각 소장되어 있다.

<표 1> 조선왕릉 능지 현황

	능지명	묘호	작성연대	형태사항	소장처
1	健元陵誌	太祖	1751년 編, 1800년 이후 寫	석인본 1책	장서각
2	健元陵誌	太祖	미상	사본 1책	국문연
3	齊陵誌	神懿王后(태조원비)	1782년 編, 1936년 寫	사본 6책	국문연
4	貞陵誌	神德王后(태조계비)	1845년 編	사본 1책	국문연
5	厚陵誌	定宗·定安王后	1785년 編	사본 1책	국문연
6	獻陵誌	太宗·元敬王后	1798년 編	사본 1책	장서각
7	顯陵誌	文宗·顯德王后	미상	사본 1책	국문연
8	魯陵誌	端宗	1663년 編, 1741년 刊	활자본 1책	장서각
9	魯陵誌	端宗	미상	사본 1책	장서각
10	莊陵誌	端宗	1711년 刊	목판본 2책	장서각
11	莊陵誌	端宗	미상	사본 2책	장서각
12	莊陵誌續編	端宗	1807년경 編	사본 1책	장서각
13	思陵誌臚抄	定順王后(단종비)	1793년 編	사본 1책	국문연
14	光陵誌	世祖·貞熹王后	1796년 編, 1936년 寫	사본 2책	국문연
15	敬陵誌	德宗·昭惠王后	1717년 編	사본 2책	장서각
16	敬陵誌	德宗·昭惠王后	미상	사본 1책	국문연
17	昌陵誌	睿宗·安順王后	미상	사본 1책	장서각
18	昌陵誌	睿宗·安順王后	1796년 編	사본 2책	장서각
19	昌陵誌·附局圖	睿宗·安順王后	미상	사본 1책	장서각

6) 조선왕릉 중 능지가 없는 경우는 英陵(세종·소헌왕후), 恭陵(예종비 장순왕후), 禧陵(중종계비 장경왕후), 寧陵(효종·인선왕후), 明陵(숙종·인현왕후, 인원왕후), 懿陵(경종·선의왕후), 隆陵(장조·헌경왕후), 裕陵(순종·순명황후·순정황후) 등 8기이다.

	능지명	묘호	작성연대	형태사항	소장처
20	宣靖陵誌	成宗·貞顯王后, 中宗	1802·1835년 編, 1936년 寫	사본 1책	국문연
21	順陵續攷	恭惠王后(성종원비)	1897~1900년 編, 1935년 寫	사본 1책	장서각
22	順陵續誌	恭惠王后(성종원비)	1879년 編	사본 1책	장서각
23	順陵續誌	恭惠王后(성종원비)	미상	사본 1책	장서각
24	溫陵誌	端敬王后(중종원비)	1741년 編	석인본 1책	국문연
25	溫陵誌	端敬王后(중종원비)	1744년 編	사본 1책	규장각
26	溫陵誌	端敬王后(중종원비)	미상	사본 1책	국문연
27	泰陵誌	文定王后(중종계비)	미상	사본 1책	국문연
28	孝陵誌	仁宗·仁聖王后	미상	사본 1책	장서각
29	孝陵誌	仁宗·仁聖王后	1858년 이후 編	사본 1책	규장각
30	孝陵誌	仁宗·仁聖王后	1827년 이후 編	사본 1책	규장각
31	康陵誌	明宗·仁順王后	1902년 補編	사본 1책	국문연
32	穆陵誌	宣祖·懿仁王后· 仁穆王后	1725년 編	사본 1책	국문연
33	章陵誌	元宗·仁獻王后	1777년 編	사본 1책	장서각
34	長陵誌	仁祖·仁烈王后	1842년 編	석인본 1책	장서각
35	長陵誌	仁祖·仁烈王后	미상	사본 1책	국문연
36	徽陵誌	莊烈王后(인조계비)	미상	사본 1책	국문연
37	崇陵誌	顯宗·明聖王后	미상	사본 1책	국문연
38	翼陵誌	仁慶王后(숙종원비)	미상	사본 1책	국문연
39	翼陵誌	仁慶王后(숙종원비)	1796~1799년 編	사본 1책	장서각
40	惠陵誌	端懿王后(경종원비)	1900년 寫	사본 1책	국문연
41	元陵誌	英祖·貞純王后	1788년 編, 1819년 補編	사본 1책	국문연
42	弘陵誌	貞聖王后(영조원비)	1792년 編	사본 1책	국문연
43	弘陵誌	貞聖王后	1792년 編, 1902년 補編	사본 1책	장서각
44	永陵誌	眞宗·孝純王后	미상	사본 1책	장서각
45	健陵誌	正祖·孝懿王后	1878년 寫	사본 4책	장서각
46	健陵誌	正祖·孝懿王后	미상	사본 1책	장서각
47	健陵誌	正祖·孝懿王后	미상	사본 3책	국문연
48	仁陵誌	純祖·純元王后	미상	사본 2책	국문연
49	綏陵誌	文祖·神貞王后	미상	사본 1책	국문연
50	景陵誌	憲宗·孝顯王后	미상	사본 1책	국문연
51	睿陵誌	哲宗·哲仁王后	1866년 編	사본 1책	국문연
52	洪陵誌	高宗·明成皇后	1930년 編, 1936년 寫	사본 1책	국문연

* 소장처의 '국문연'은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약칭임

52종의 능지 가운데 이왕직에서 능원묘를 일괄 조사할 때 작성한 능지가 32종에 이를 정도로 상당수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왕직에서 능원묘를 일괄 조사하여 능지를 작성한 시기가 언제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현재 학계에서는 1913년경 이후로 추정하고 있지만 이 또한 근거가 제시된 바 없다. 이왕직에서 작성한 능지의 지면에는 일률적으로 10행의 붉은 과선이 쳐져있고 관심의 어미 아래에 ‘李王職’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어, 이를 통해 이왕직 필사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왕직에서 작성한 32종의 능지는 대부분 작성 일시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 가운데 『齊陵誌』·『光陵誌』·『宣靖陵誌』·『洪陵誌』 등 4개의 능지에는 작성 일시가 명기되어 있고, 모두 1936년(소화 11)이라는 등사 일자를 적어놓았다. 더구나 ‘1935년 가을 능참봉의 정기모임 때 이왕직 산하 禮式課의 훈령 또는 시달에 따라 능지를 베끼는 작업을 시작해 이듬해인 1936년에 완료했다’는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을 담은 기록이 있어, 이왕직에서 등사한 대부분의 능지가 1935년 후반에서 1936년 전반기에 걸쳐 작성되었을 개연성을 충분히 뒷받침해준다고 할 수 있다.

3. 능지 개요

능지에는 일반적으로 서문 및 발문이 있어 이를 통해 능지 작성 연대를 비롯해 작성 경위와 배경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능지의 앞부분에 목록을 따로 작성한 경우도 있어 전체의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본고에서 다루는 20종의 능지는 대부분 서·발문이 있다. 여기서는 이들 기록을 주로 분석하여 능지의 성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1 健元陵誌(太祖)

3.1.1 健元陵誌

- 韓後裕 編(1751년, 영조 27), 1800년 이후 寫, 석인본 1책(43장) 上·下編, 장서

각(K2-4410) 소장.

韓後裕가 1751년(영조 27년)에 편찬한 太祖의 『建元陵誌』로, 1800년(정조 24) 이후에 간단한 기록을 추가한 석인본이다. 1면의 한후유의 識에 따르면 齋中에 『健齋記聞』이라는 舊陵誌가 있었는데, 능침에 관한 事蹟과 條例가 소략한데다 세월이 오래 돼 글자가 안 보이는 곳이 많아 다섯 능지(구체적인 능지명은 지적하지 않음)에서 凡例와 分目を 절충하여 상편을 만들고, 공식절목과 직무서관에 관한 부분은 따로 하편에 기록했다고 한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한후유가 영조 26년(1750) 8월 10일 건원능 참봉에 임명되어 이듬해 12월 28일 左從史에 임명된 것을 보면 능참봉 2년째 되던 해에 이 능지를 편찬했음을 알 수 있다.⁷⁾ 능지 앞부분에 목록이 따로 없으나 내용에 따라 나눠보면 다음과 같다.

<建元陵誌上>

太祖行狀·神懿王后韓氏行狀·神德王后康氏行狀 등 11종의 儀軌文字,⁸⁾ 陵寢, 陵上莎草, 丁字閣, 碑閣, 典祀廳, 香大廳, 齋室, 洞口外舊誌, 香炭山, 位田, 復戶, 承傳, 祭享時節目, 陵幸時規式, 忌辰大祭祭物陳設圖 등 3종의 圖式.

<建元陵誌下>

齋中凡規, 正朝祭獻官書啓式 등 12종의 문첩규식, 本齋完議.

3.1.2 健元陵誌

- 韓後裕 編(1751년, 영조 27), 李王職 寫, 사본 1책(48장) 上·下編, 국립문화재연구소(文K2-4409) 소장.

능지 1면에 ‘健元陵誌 上下’라는 표제 오른쪽 상단에 ‘東九陵’이라고 써어있고,

7) 상편의 『祭享時節目』 바로 뒤에 숙종 이후 열성의 親行奉審 사례를 열거해놓았는데, 가장 끝에 정조가 1800년(정조 24) 3월 20일에 영조와 정순왕후의 元陵을 행행한 뒤 六陵을 봉심한 사례를 기록해놓은 것으로 보아 이 『건원릉지』는 그 이후에 작성된 전사본임을 알 수 있다.

8) ‘儀軌文字’는 왕과 왕비의 생애에 관한 각종 국가의 공식 기록을 의미한다. 『昌陵誌』(K2-4487·8)의 항목별 분류 방식을 따랐다.

2면에는 한후유의 識가 실려 있다. 구성과 내용은 장서각본(K2-4410) 『건원능지』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한후유가 편찬한 장서각본을 저본으로 이왕직에서 필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능지 하편 마지막에 실린 『本齋完議』 뒤에 ‘餽餘封裏式’ 2줄이 추가된 것이 다르다.

3.2 齊陵誌(神懿王后, 태조원비)

- 李煥 編(1782년, 정조 5), 李王職 寫(李丙斗, 1936년), 사본 6권6책, 국립문화재연구소(文K2-4484) 소장.

1면에 『제릉지』를 편찬한 李煥의 『齊陵誌序』가 있다. 이에 따르면 이흠이 1781년(정조 5) 제릉 참봉이 되어 왔으나 재중에 의거할만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게 전혀 없어 공사의 문적을 모아 1책으로 능지를 편찬했다고 한다. 서문의 내용 중 『제릉지』를 편집한 차서를 陵寢全圖, 儀節, 封崇顛末, 碑文, 列朝行幸日月, 修理事蹟의 순으로 크게 분류해놓았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이흠은 정조 5년(1781) 2월 24일 齊陵參奉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12월 29일 濟用奉事에 임명되었다. 이로 보건대 이흠이 제릉 참봉을 지낸 2년째 되던 해(1782) 7월에 이 능지를 편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6권으로 이루어진 능지 각권의 말미에는 『제릉지』를 최종으로 轉寫한 연도와 참봉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특히 권5 말미의 기록에 의거해 볼 때 1935년 10월 17일 참봉들의 例會(정기모임) 때 李王職 禮式課의 訓令에 따라 이듬해인 1936년 2월 20일 제릉 참봉 李丙斗가 베껴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능지 앞부분에 목록이 따로 없으나 내용에 따라 나눠보면 다음과 같다.

<권1>

齊陵誌序, 五名日大祭祀式, 忌辰大祭祀式, 節享, 山陵全局圖 등 5종의 圖式, 陵寢石物, 陵寢忌辰四節冬至告由慰安祭享祭物式 등 3종의 제향 관련 조목, 本陵事實, 神道碑文 등 3종의 의궤문자, 陵上修改事蹟, 正朝祭獻官書啓式 등 13종의 문첩규식, 傳教, 陵園墓樹木禁斫節目, 陵官, 陵軍, 凡例規式, 陵幸時規

式, 齋室重修記, 廣德山事蹟, 齋室奉審書啓, 追後事蹟, 陵上石物, 外案山, 香炭山, 禁盜軍改定式節目,⁹⁾ 禁盜軍革罷完議.

<권2>

禮曹下帖 및 齊陵令牒報 등, 陵軍闕額事立議.

<권3>

1849년(헌종 15) 9월 23일부터 1886년(고종 23) 정월 초하루까지의 제릉에서 설행된 각종 제사와 관련된 受香 및 餽餘上京 일시, 영과 참봉의 肅拜 및 入直 일시를 기록함.

<권4>

1886년(고종 23) 7월 29일부터 1896년(건양 1)까지의 제릉 관련 일지.¹⁰⁾

<권5>

1903년(광무 7)부터 1910년 6월 25일까지의 제릉 관련 일지.¹¹⁾

<권6>

齊陵誌序(李周瓚, 1929년), 1928년부터 1930년까지의 제릉 관련 일지.

3.3 貞陵誌(神德王后, 태조계비)

- 金彝淳 編(1845년, 헌종 11), 李王職 寫, 사본 1책(51장) 上·下編, 국립문화재연구소(文K2-4483) 소장.

-
- 9) 『禁盜軍改定式節目』은 火巢 구역의 도벌 방지를 담당하는 수호군의 절목에 대한 개정을 청한 내용으로, 말미에는 당시 제릉 령이었던 柳匡宇와 능 참봉이었던 洪徹榮이 1815년(순조 15)에 썼다는 간기가 있다. 그 뒤로 제릉 령 崔仁簡과 참봉 安在默이 작성한 『禁盜軍革罷完議』가 이어지는데, 이곳에는 기묘년 9월에 썼다는 간기가 있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최인간은 순조 18년(1818) 2월 27일에 제릉 령에 임명되었고 안재묵은 순조 17년(1817) 5월 7일에 제릉 참봉에 임명되었으므로 간기의 기묘년은 1819년(순조 19)이 된다. 따라서 이흥이 『제릉지』를 1782년(정조 5)에 편찬한 이래로 후대의 능 령 또는 참봉에 의해 능지가 지속적으로 보완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0) 권4 말미에 掌禮院 卿 金明圭의 훈령을 언급하고 있어 이전에 예조에서 관장하던 제사 및 능 관련 업무가 1895년(고종 32)의 관계개편으로 인해 장례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 11) 권5의 내용 중 1907년(융희 1) 7월 26일 능상의 석물을 수개할 일로 당시 능참봉이었던 嚴柱華가 掌禮院에 보고한 抄記를 포함한 다수의 글에서 한글의 助辭가 사용되고 있어 이때부터 공문서에 국한문 혼용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능상과 전내의 비각이 별 탈이 없는지를 봉심한 1910년 6월 25일의 일지가 일제에 병탄되기 전의 마지막 기록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자못 깊다. 아울러 일제강점기에도 능의 령과 참봉이 지속적으로 번갈아 임명되며 능의 제반 사무를 관장했음을 권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편 말미의 기록에 의거 1845년(헌종 11) 2월 당시 정릉 참봉이었던 金彝淳이 『정릉지』를 편집했음을 알 수 있다. 김이순은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헌종 10년(1844) 1월 25일 정릉 참봉에 임명되었고 이듬해 9월 11일 司僕主簿로 임명된 사실이 있어 정릉 참봉 2년째 되던 해에 『정릉지』를 작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뒤에 부록으로 1900년(광무 4) 8월 당시 정릉 참봉이었던 金暲中의 『齋室重建記』, 1907년(융희 1) 9월 掌禮院 李重夏의 정릉 표석 磨淨 관련 훈령이 이어져 『정릉지』는 1907년에 최종 정리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능지 앞부분에 목록이 따로 없으며 내용은 上·下編으로 나뉘 신덕왕후에 관한 역대 사료를 집성해놓았으며, 각 사안마다 ‘謹按’으로 시작하는 형식을 빌려 편자의 견해를 간략히 적어놓았다. 상·하편의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上篇>

신덕왕후의 행력과 陵寢·願堂·遷葬 등에 관한 역대 명신들의 저술 및 차자·소장·계문.

<下篇>

追上徽號·太廟祔廟·정자각중건·기신제·고유제 등과 관련한 역대 예조와 명신들의 계문.

3.4 厚陵誌(定宗·定安王后)

- 趙鎮寧 編(1785년, 정조 9), 李王職 寫, 사본 1책(64장), 국립문화재연구소(文 K2-4503) 소장.

『후릉지』의 내용 후반부에 후릉 참봉 趙鎮寧이 1785년(정조 9)에 『후릉지』를 편찬한 동기를 설명해 놓았다. 이에 따르면 후릉에 원래 舊陵誌가 전해져 오는 게 없어 여러 역사서와 개인적으로 들은 바를 모아 기록했다고 되어있다. 조진녕은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1784년(정조 8) 8월 3일 후릉 참봉에 임명되어 1786년 10월 26일 廣興奉事에 임명되기까지 2년간 후릉 참봉으로 있었다. 조진녕의 글 다음으로 1904년(광무 8) 장례원 경 趙定熙가 찬술하고 직접 쓴 『仁德宮碑文』과

비문 건립의 감역을 담당한 후릉 령 金謹鏞의 기록이 이어져 『후릉지』가 1904년 이후에 최종적으로 정리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본 능지는 따로 목록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목록에 해당하는 각 항목을 짧고 개략적으로 서술해놓았다. 그 내용과 차례는 다음과 같다.

『國朝寶鑑』·『璿源世系』상의 定宗·定安王后 행력, 『列聖誌狀』상의 定宗·定安王后의 行狀에서 碑文까지 13종의 의궤문자, 山陵, 象設, 寢殿, 陵官, 守護軍, 祭享, 祭物, 祭器, 奉審, 火巢, 位沓, 香炭山, 趙鎮寧의 識(1785년), 仁德宮事蹟, 仁德宮碑文(1904년), 厚陵齋室懸板에 관한 영조의 御製飭諭(1749)와 李喆輔의 기록.

3.5 獻陵誌(太宗·元敬王后)

- 金明淵 編(1798년, 정조 22), 李王職 寫, 사본 2권1책(91장), 장서각(K2-4492) 소장.

『후릉지』 말미에 능지를 편집한 金明淵의 발문이 있으며, 바로 뒤로 金명연의 손자 金學性이 廣州府留守로 있을 때 『후릉지』 1부를 繕寫하며 남긴 글(1850년, 철종 1)이 이어져 金명연이 현릉 참봉으로 있던 1798년(정조 22)에 이 능지를 편집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뒤로는 金명연의 현손으로 역시 현릉 참봉을 지낸 金鎮肅의 글(1905년, 광무 9)이 실려 있어 1905년을 즈음해 이 능지가 최종 정리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능지 목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내용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다.

<권1>

陵寢, 璿源譜略, 大王行狀·王妃誌文 등 19종의 의궤문자.

<권2>

象設, 丁字閣, 碑閣, 紅箭門, 祭井, 典祀廳, 香大廳, 齋室, 齋郎, 守護軍, 御製印頒飭諭, 御製飭諭, 祀典 등 18종의 제향 관련 조목, 中使摘奸時節目 등 21종의 奉審·禁養·折受¹²⁾ 관련 조목, 復戶, 古蹟, 傳掌, 題獻寢誌末, 報狀規式 등 10종의 문첩규식, 金命淵·金學性·金鎮肅 跋文.

3.6 顯陵誌(文宗·顯德王后)

- 李王職 寫, 사본 1책(49장), 국립문화재연구소(文K2-4494) 소장.

『현릉지』 내용 중 역대 왕이 친행하여 봉심한 사례를 기록해놓은 『親幸奉審』조에 1790년(정조 14) 10월 2일 정조가 친행 봉심한 사례와 함께 당시 현릉 령 姜世揆와 참봉 申夔相의 이름을 명시해놓은 것이 가장 후대의 기록인 것으로 보아 『현릉지』가 1790년 이후에 최종 정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강세규는 1789년(정조 13) 11월 3일 현릉 령에 임명되었으며, 신기상은 1790년(정조 14) 7월 4일 현릉 참봉에 임명되었다. 목록을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내용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다.

大王行狀·顯德王后遷陵誌文 등 12종의 의궤문자, 大王事蹟, 王后復陵事蹟, 丁字閣, 丁字閣重建上樑文, 防川石, 火巢界限, 家舍間數, 香炭山, 守護軍額數, 位田, 守護軍復戶, 各陵守護軍子枝, 守護軍充定長單子式 등 9종의 문첩 규칙, 祭祀時節目, 祭饌圖, 親幸時節目, 親幸奉審, 陵上莎草修補, 陵內凡規, 承傳條, 丁字閣所在物件, 祭器置簿.

3.7 魯陵誌(端宗)

3.7.1 魯陵誌

- 尹舜舉 編(1663년, 현종 4), 尹東源 刊(1741년, 영조 17), 활자본 2권1책(79장), 장서각(K2-4418) 소장.

魯陵은 단종의 능으로, 단종이 1457년(세조 3) 魯山君으로 降封되고 寧越에

12) ‘禁養’은 능역의 경계로 지정한 火巢 안에서의 벌채·매장·농지개간 등을 금지하여 수목의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뜻한다. ‘折受’는 국가로부터 일종의 토지 소유권을 발급받거나 田租의 收租權을 지급받는 것으로, 능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항목이다.

安置되어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노릉’이라는 능호가 있게 되었다. 숙종 24년(1698)에 노산군의 묘호를 ‘端宗’으로 올리고 능호를 ‘莊陵’으로 추상함에 따라 이후로는 장릉으로 불렸다.

『魯陵誌』는 말미에 편자인 尹舜舉와 이를 간행한 종증손 尹東源의 발문이 있어 능지의 간행 경위와 내용의 개략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노릉지』는 영월 군수로 있던 윤순거가 1663년(현종 4)에 편집하여 보관해 오던 것을 종증손 윤동원이 1741년(영조 17) 윤순거의 遺集을 펴내며 함께 간행하였다고 한다. 이에 앞서 1711년(숙종 37)에 윤순거가 편집한 미간행본 『노릉지』를 저본으로 삼은 『莊陵誌』가 간행되었는데, 이 또한 顛錯된 부분이 많고 본래의 편차에 비해 틀린 곳이 많아 이를 수정하여 『노릉지』를 간행하게 되었음을 윤동원의 발문에 밝혀놓았다.

윤순거의 발문은 그의 문집 『童土集』 권5에도 동일한 내용의 『魯陵誌跋』이 실려 있다. 이에 따르면 윤순거가 『노릉지』를 편집하기 이전에 영월군에서 노릉에 관해 전해오던 기록이 있었는데, 매우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화재가 나는 바람에 자세한 傳記를 잃게 되었고,¹³⁾ 앞서 군수를 지낸 李文雄이 타고 남은 나머지를 수습해 『魯陵錄』을 만들었으나 일종의 관리 문서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정협할 만한 것이 못 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윤순거가 그 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雜記小說에서 관련 사실을 널리 취하여 『노릉지』를 만들고, 내용에 따라 事實, 墳墓, 祠廟, 祭祀, 題記, 附錄의 6조목으로 나눴다.

능지 1면에 목록을 따로 작성해 두었는데 크게 권1·2로 구분하였다. 권1의 내용에 앞서 ‘凡例’ 3조목을 두어 능지의 서술 방식을 綱目을 설정하여 기술할 것, 단종 즉위년인 1453년부터 영월에서 죽음을 맞은 1457년(세조 3)년까지의 사적에 대한 다양한 기록을 참고하되 전거를 밝히고 주를 달아 함부로 취사하지 않을 것, 참고한 저술의 아래에 저자의 성명을 기록하겠다는 점 등을 언급해놓았다. 그 뒤로 능지 작성에 참고한 자료를 ‘所裒諸說’이란 제목을 달고 『金石一斑』

13) 1711년(숙종 37)에 목판본으로 간행된 『장릉지』 권2 부록 말미의 윤순거의 「舊誌跋」에는 1583년(선조 16)에 강원도관찰사가 된 鄭昆壽가 옛날서부터 전해오던 기록을 빌려 보다 화재가 났다는 기록이 추가되어 있다.

부터 『戊午錄』까지 45종의 책명과 저자 서명을 적어놓았다.

1면의 목록 하단에 이 능지가 茂朱赤裳山史庫 소장이었다가 조선총독부로 옮겨진 뒤 다시 이왕직도서로 이관했음을 알려주는 2개의 인장이 찍혀있다. 목록은 다음과 같다.

- <권1> 事實,¹⁴⁾ 墳墓, 祠廟, 祭祀.
- <권2> 題記, 附錄(戊午士禍附).

3.7.2 魯陵誌

- 尹舜舉 編(1663년, 현종 4), 사본 1책(36장), 장서각(B15FB 11) 소장.

윤순거가 편집한 『노릉지』를 그대로 베껴 쓴 전사본으로, 작성연대는 알 수 없다. 내용은 윤동원이 간행한 활자본(장서각, K2-4418)과 동일하나 맨 앞에 목록과 범례가 없으며, 『노릉지』를 작성할 때 참고한 서적을 적어놓은 「所裒諸說」이 활자본과 달리 맨 뒤에 놓여있다.

3.8 莊陵誌(端宗)

3.8.1 莊陵誌

- 朴慶餘·權和 編, 목판본 4권2책, 1711년(숙종 37) 간, 장서각(B15FB 25A) 소장.

『장릉지』는 魯山君이 端宗으로 복위된 뒤에 尹舜舉(1596~1668)가 1663년(현종 4)에 편찬했던 『魯陵誌』를 기반으로 朴慶餘·權和 2인이 補編하고 박경여가 최종 정리하여 간행한 것이다.

14) 권1 「事實」의 내용 중 금부도사가 상왕을 寧越 西江의 淸泔浦에 안치시키고 曲灘岸에서 지었다는 가사 ‘千萬里 머나먼 길희……’와 권2 「부록」의 내용 중 朴彭年이 지은 短歌 ‘金生麗水라 혼들……’가 諺文으로 쓰여 있어 눈길을 끈다.

이 능지를 편간한 박경여의 생몰년은 미상이나 사육신 중의 한 사람인 朴彭年의 9대손으로, 노산군이 숙종 24년(1698) 단종으로 복위된 초기에 장릉 참봉에 제수되었으며,¹⁵⁾ 숙종 33년(1707)에 淸安縣監에 제수되었다.¹⁶⁾ 이 능지는 그가 청안 현감으로 있던 숙종 37년(1711)에 자신의 봉급을 털어 간행한 것으로, 능지 말미의 박경여와 권화의 후기에 편집 경위를 알려주는 내용이 실려 있다. 박경여의 후기에 따르면 윤순거가 찬술한 舊誌(『노릉지』)를 안동의 권화¹⁷⁾가 고증하는 한편, 단종의 복위 사실과 六臣의 建祠·復官 전말을 따로 모으고 續錄을 엮어서 구지의 뒤에 붙여 『장릉지』를 편집하였다고 한다. 다만 권화가 편집한 것은 시대순에 따라 육신 복관(1691년, 숙종 17) 전말에 관한 내용을 단종 복위(1698년, 숙종 24) 사실에 관한 내용의 앞에 두었는데, 박경여가 統紀의 구별과 輕重의 차서에 따라 편집방식을 바꿔 단종 복위 관련 사실을 앞에 두고 육신의 사적과 제가의 설을 뒤로 붙인 뒤 구지와 속록을 구별하여 『장릉지』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뒤 간행한 것이다.

본 능지 맨 앞에 실린 南鶴鳴의 자필 『莊陵誌序』(1709년, 숙종 35)에도 박경여가 청안 현감으로 있으면서 권화와 함께 단종이 복위되기까지의 사실을 낱낱이 모아 『노릉지』의 뒤에 붙여 『장릉지』라 한 뒤 자신에게 서문을 부탁했다고 써여 있어 2인이 공동으로 편집했음을 알 수 있다.

권3 『續誌』와 권4 『附錄』 사이에 崔錫鼎(1646~1715)의 자필 『莊陵誌後序』가 있는데, 내용 중 단종 복위 후 능지의 수정과 간행을 위해 申奎(1659~1708)에게 찬술을 맡겨 윤순거의 구지를 바탕으로 단종 位號 追復 과정에서의 疏章, 獻議, 備忘記 및 제신의 시문을 덧붙였다고 한 내용이 있다. 신규는 숙종 24년(1698)에 魯山君의 복위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려 노산군이 端宗의 묘호와 莊陵의 능호로 추봉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인물이다.¹⁸⁾ 이로 보건대 신규가 올린

15) 『莊陵誌』(장서각 B15FB 25A), 『莊陵誌後序』(崔錫鼎 撰) 참조.

16) 『승정원일기』 숙종 33년(1707) 5월 6일조.

17) 權和의 생몰년은 미상이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경종 2년(1722) 章陵參奉과 영조 원년(1725) 義禁府都事를 거쳐 영조 재위 초기에 陰城과 鎭峯의 현감을 역임하였다.

18) 『조선왕조실록』 숙종 24년(1698) 9월 30일조.

단종 복위 소장, 상소에 대한 제신들의 의견을 묻는 헌의 과정을 담은 내용, 숙종이 신규의 상소를 받아들이며 빈청에 내린 비망기의 내용 등에 대해서는 신규가 따로 능지를 작성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⁹⁾

『장릉지』의 내용을 살펴볼 때 권화가 엮은 속록은 권4 『부록』에 해당하고, 신규가 찬술했다는 내용은 권3 『속지』의 일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장릉지』의 편자는 박경여와 권화 외에 신규도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석정의 후서 내용에 따르면 당시 청안현감으로 있던 박경여가 자신의 봉급을 털어 능지를 간행하며 최석정에게 제발을 부탁했다고 써어있다. 이는 능지의 간행이 해당 능소의 공식적 관행을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박팽년의 9대손인 박경여가 능지의 편찬과 간행을 통해 단종 복위와 봉릉에 대한 정당성을 공고히 하는 한편, 사육신으로서 충렬의 표상이 된 선조를 현창하려는 강한 의지가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본 『장릉지』는 乾·坤 2책에 4권으로 구성되어있다. 능지 1면에는 권1·2의 목록이 있고, 목록 다음으로 ‘凡例’ 4조목을 두었다. 이는 『魯陵誌』의 3조목에 1조목을 더한 것으로, 『舊誌(노릉지)』 중 빠트린 것이 있을 경우 補遺하여 해마다 追錄하였으며, 능지를 완성한 뒤의 事蹟도 해마다 添입하였다’는 내용의 조목 하나를 더 두었다.²⁰⁾ 그 뒤로 능지 작성에 참고한 자료를 구지의 ‘所裒諸說’이란 제목 대신 ‘記事出處’로 대신하였으며, 구지에서 45종의 저술을 참고한 반면 본 능지에서는 36종의 저술이 적혀있다.

권4 부록의 내용 말미에 “구지는 세종 신유(1441년, 세종 23)로부터 효종 계사(1653년, 효종 4)까지, 속지는 현종 임인(1662년, 현종 3)으로부터 금상 갑신(1704년, 숙종 30)까지 상하 통틀어 250여년이다.”고 하여 능지에 수록된 각종 기록의

19) 정조는 1791년(정조 15) 1월 17일 현릉원을 배알하고 수원 행궁으로 돌아온 뒤, 전날 육신묘 곁을 지나다 감회가 일은 것을 상기하여 제문을 직접 지어 치제하게 하는 한편, 위호 회복을 요청했고 고 현감 申奎의 집이 수원에 있다는 말을 듣고 증손 申應漢을 장릉 참봉에 제수했다. 『조선왕조실록』 정조 15년(1791) 1월 17일조 ; 『승정원일기』 정조 15년 1월 17일조 ; 『승정원일기』 정조 15년 1월 20일조.

20) 능지를 보면 실제로 補遺한 부분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 서두에 음각으로 ‘補遺’라고 새겨 구분해놓았다.

연한을 명시해놓았다. 목록은 다음과 같다.

<莊陵誌 乾>

莊陵誌序(南鶴鳴, 1709년), 莊陵誌目錄, 凡例, 記事出處.

권1 舊誌: 事實, 墳墓, 祠廟, 祭祝上.

권2 舊誌: 祭祝下, 題記, 附錄(六臣傳, 戊午土禍, 元生夢遊錄, 舊誌跋).

<莊陵誌 坤>

莊陵誌目錄

권3 續誌: 復位(收議附), 封陵, 題記, 莊陵誌後序(崔錫鼎, 1711년).

권4 附錄: 六臣復官, 建祠, 祭祝, 寧越六臣祠宇事略, 愍節書院事略, 綠雲書院事略, 洛濱書院事略, 朴慶餘·權和 後記.

3.8.2 莊陵誌

- 朴慶餘·權和 編, 李王職 寫, 사본 4권2책, 장서각(K2-4480) 소장.

본 능지는 魯山君이 단종으로 복위된 뒤에 尹舜舉(1596~1668)가 1663년(현종 4)에 편찬했던 『魯陵誌』를 기반으로 朴慶餘·權和 2인이 補編하고 박경여가 최종 정리하여 그가 청안 현감으로 있던 1711년(숙종 37)에 간행한 『莊陵誌』를 일제강점기 때 李王職에서 등사한 것이다.

본 『장릉지』는 乾·坤 2책에 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능지 1면에는 권1·2의 목록이 있고, 목록 다음으로 ‘凡例’ 4조목을 두었다. 능지의 전반적 체재와 수록 내용은 장서각 소장 목판본 『장릉지』(B15FB 25A)와 동일하다. 다만 목판본 『장릉지』에는 맨 앞에 南鶴鳴의 서문이 있으나 본 능지에는 없으며, 권3·4 사이에 있는 崔錫鼎의 후서가 본 능지에는 맨 뒤에 박경여와 권여의 후지 뒤에 놓여있는 점이 다르다.

3.8.3 莊陵誌續編

- 朴奎淳 考證, 사본 3권1책(87장), 1807년경 編, 장서각(K2-4482) 소장.

『장릉지속편』은 『장릉지』의 체제를 계승하여 영·정조 연간에 이루어진 추승과 수개 관련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능지이다. 모두 3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권에는 능침 관련 기사와 시문, 2권에는 단종 유적의 정비와 현양, 3권에는 단종 제신의 현창 및 수호 사찰의 내력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²¹⁾

본 능지에는 편자와 작성 경위를 알려주는 서발문 등의 기록이 없으나, 실록 및 『승정원일기』의 기사를 통해 그 대략을 알 수 있다. 순조 7년(1807) 11월 5일 영월 부사 朴奎淳이 『장릉지속편』을 撰進하며 이를 간행하여 널리 배포할 것을 청하여 순조의 재가를 받은 사실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²²⁾ 이를 보면 박규순이 『장릉지속편』을 찬술하여 바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같은 날짜의 『승정원일기』 기사에는 박규순이 영월 부사로 재임할 당시 장릉의 능관이 장릉과 영월 부에 있는 문적을 가져다 영조 10년(1734)부터 순조 6년(1806)까지 모두 73년의 기록 중 장릉과 관련된 사실을 구지(『노릉지』)에 이어 분류하여 한 책으로 엮었으며, 박규순이 이를 재차 고증하고 한 본을 繕寫하여 어람용으로 바친다는 기록이 있다.²³⁾ 『승정원일기』의 내용이 정황상 더 자세한 것으로 보아 『장릉지속편』은 당시의 능관이 찬술하고 박규순은 고증과 선사의 역할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규순은 1805년 윤6월에 영월 부사로 부임하였고 『장릉지속편』을 바친 것은 1807년 11월이다. 그 기간에 장릉 능관을 역임한 자는 장릉 령 沈景文(1805년 12월~1808년 6월 재임)과 장릉 참봉 尹匡烈(1806년 2월~1808년 6월 재임)이므로, 이들 중 한 사람이 『장릉지속편』을 찬술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²⁴⁾

『장릉지속편』은 서두에 범례와 목록이 실려 있다. 범례 7조항 중 제1조항에는 영조 10년(1734)부터 순조 6년(1806)까지의 장릉 崇奉과 修改와 관련하여 진행된 의식을 빠짐없이 기록한다는 원칙을 명시해놓았다.²⁵⁾ 수록된 목록은 다음과 같다.

21) 『장릉지속편』에 관해서는 김덕수, “장릉 관련 능지의 찬술과 『장릉지속편』,” 『譯註 莊陵誌續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1), 10-19 참조.

22) 『조선왕조실록』 순조 7년(1807) 11월 5일조.

23) 『승정원일기』 순조 7년(1807) 11월 5일조.

24) 김덕수(2011), 15.

25) 이밖에 『장릉지』와 관련하여 1796년(정조 20) 정조의 명에 따라 작성된 『莊陵誌補草稿』(李義駿·尹光普 등편, 사본 6책, 奎 1944), 『莊陵史補』(李義駿·尹光普 등편, 9권3책,

目錄

<권1> 陵寢修改事蹟, 陵所碑文, 寒食祭享祝文式, 大祭陳設之圖, 贊者笏記, 謁者笏記, 詩文.

<권2> 淸泠浦, 觀風軒, 子規樓.

<권3> 忠臣壇, 彰節祠, 愍忠祠, 報德寺附.

3.9 思陵誌(定順王后, 단종비)

3.9.1 思陵誌謄抄

- 鄭運耆 編(1793년, 정조 17), 李王職 寫, 사본 1책(36장), 국립문화재연구소(文 K2-4434) 소장.

『思陵誌謄抄』는 기존의 『사릉지』를 베껴 쓴 것으로, 사릉의 사적과 단종비 정순왕후 복위전말, 그리고 봉릉 이후의 文狀·典禮·武例 등에 관한 내용을 모아놓았다. 본 능지는 이왕직 때 전사한 것으로, 표제를 ‘思陵誌謄抄’라고 쓴 것으로 보아 이왕직 시기 이전에 원래 있던 『思陵誌』를 베껴 썼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본 『사릉지』의 출처는 알 수 없다.

능지 말미에 1793년(정조 17)에 작성한 鄭運耆의 後識가 있어 능지 작성 경위의 대략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정운기의 중형인 鄭運熙가 사릉 참봉으로 있던 1736년(영조 12)에 『사릉지』를 작성하고,²⁶⁾ 56년 뒤 사릉 참봉으로 온 정운기가 능지를 다시 繕寫하고 續錄을 추가해 작성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운기는 해평부 원군 鄭眉壽(1456~1512)의 8대손이다. 영양위 鄭棕과 敬惠公主 사이에서 태어난 정미수는 단종과 정순왕후와는 숙질간으로, 단종이 영월에 유배되어 죽은 뒤로 의지할 데 없던 정순왕후가 최후로 몸을 의탁한 곳이 바로 정미수 집안이고, 82세로 생을 마감한 뒤 예장되어 묻힌 곳이 정미수가의 선영에 위치한 사릉이다.

奎貴 3864)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모두 능지의 체례를 갖춘 것이라기보다는 단종 복위 이후의 관련 사적을 집대성한 경향이 강하므로 대상 능지에서 제외하였다.

26) 정운희는 1736년(영조 12)에 사릉 참봉에 제수되었고 이듬해 군자감 직장으로 천전하였다. 『승정원일기』 영조 12년(1736) 6월 2일조, 13년(1737) 12월 29일조 참조.

1698년(숙종 24) 노산군으로 강봉되었던 단종이 복위됨에 따라 단종의 능이 장릉으로, 정순왕후의 능이 사릉으로 봉릉되었으며, 숙종대를 이어 영·정조대에도 단종 복위사건과 관련하여 화를 입은 충신들에 대한 신원과 현창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²⁷⁾ 정조가 장릉에 配食壇을 건립함으로써 단종 추복과 제신 현창의 대미를 장식했던 1791년(정조 15) 9월 정조가 사릉에 배알하고 작헌례를 행하였는데, 해평부원군 정미수의 자손에게 치제에 참가하게 하는 한편, 사릉 화소 경계 안에 있는 정씨 일가의 11개의 분묘를 능관으로 하여금 보살피게 하고 이를 능지에 신도록 하였다. 또한 정미수의 8대손 정운기를 직접 만나 위로하고 정운기를 사릉 참봉에 제수하였다.²⁸⁾ 이 능지는 바로 정운기가 사릉 참봉에 제수된 지 2년 뒤에 작성한 것이다.

능지 원문은 제4면부터 시작되는데 3면까지는 사릉이 해주 정씨 집안 선영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강조한 역사적 기록이 발췌되어 있다. 제1면에는 정조가 1791년(정조 15) 9월 25일 사릉을 배알하고 난 느낌을 적은 칠언율시 『講思陵志感』이 실려 있다.²⁹⁾ 율시 말미에 蔡濟恭이 교서를 받들어 썼다고 되어 있어 당시에 지었던 정조의 시를 채제공이 썼던 것으로 보인다.³⁰⁾ 2면에는 사릉 능역 화소 안에 있는 해주 정씨 집안의 능제사와 관련한 최석정의 계문에 대해 정씨가 분묘를 이장하지 말고 望祭를 지내도록 허락한 숙종의 비답이 실려 있고,³¹⁾ 3면에는 정씨 집안의 분묘를 사릉의 능관이 관리하도록 한 숙종·영·정조대의 기사를 발췌해놓았다.³²⁾

『사릉지등초』는 별도의 목록을 작성해놓지 않았으나, 크게 정운희가 편집한

27) 숙종~정조대의 단종 추복과 제신 현창에 관해서는 이현진, “조선후기 단종 복위와 충신 현창,” 『史學研究』 제98호(2010), 41-89 참조.

28) 『조선왕조실록』 정조 15년(1791) 9월 25일조.

29) 이 칠언율시는 『弘齋全書』 권6에도 같은 제목으로 실려 있다.

30) 해주정씨 해평부원군 종가의 고문서를 다룬 『忠을 다하고 德을 쌓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232쪽 도117 참조.

31) 『조선왕조실록』 숙종 25년(1699) 2월 10일조에 그 내용이 소략하게 실려 있다.

32) 『승정원일기』 숙종 39년(1713) 9월 25일조 ; 『승정원일기』 영조 12년(1736) 8월 29일조 ; 1791년(정조 15) 9월 25일 사릉 행행시의 기록(이 부분은 실록과 승정원일기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출처가 불분명하다.)

『奉陵前後事實』과 정운기가 편집한 『續錄』으로 구분된다. 『봉릉전후사실』에는 정순왕후의 행장과 복위부묘도감과 봉릉도감 명단 등이 실려 있고, 『속록』에는 사릉 치제, 건각, 입비, 어제 등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다. 그 뒤로 사릉 참봉으로 있던 徐有英(1801~1874)이 작성한 『書思陵誌後』(1862년, 철종 13)와 『思陵齋廬種花木記』(1861년)가 실려 있고, 끝에는 정운기의 후지(1793, 정조 17)와 정미수의 11대손으로 사릉 참봉으로 있던 鄭天和의 칠언율시 『癸巳二月寒食日志感』(1833년, 순조33)이 실려 있다.³³⁾ 이처럼 정운기의 후지 외에도 후대에 작성한 제발과 후기가 뒤따르는 것으로 보아 정운희·정운기가 능지를 편찬한 뒤에도 추가로 증보되어 1862년 서유영에 의해 『사릉지등초』가 최종적으로 정리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³⁴⁾

3.10 光陵誌(世祖·貞熹王后)

- 金宗善 編(1796년, 정조 20), 李王職(趙東喆, 1936년) 寫, 사본 4권2책, 국립문화재연구소(文K2-4417) 소장.

『光陵誌』는 世祖와 貞熹王后의 능침인 광릉 관련 기록을 모아 엮은 것으로, 1796년(정조 20) 광릉 참봉 金宗善이 편찬한 능지를 1936년 이왕직 때 광릉 참봉 趙東喆이 전사한 것이다.

능지 맨 앞에는 능령 李憲圭와 능참봉 김종선의 서문이 있어 당시에 『광릉지』를 편찬하게 된 배경을 알 수 있다. 김종선의 서문에 의하면 당시 광릉 재실에 전임 李顯箕³⁵⁾의 『光陵攷事備要』와 尹鎰³⁶⁾의 『光陵陵規』가 있었으나 전혀 체제

33) 鄭天和는 1831년(순조 31)에 사릉 참봉으로 임명되었다. 『승정원일기』 순조 31년(1831) 6월 22일조.

34) 능지 편찬자 정운희·정운기에 이어 해평부원군 정미수의 11대손 정천화가 사릉 참봉에 임명되는 예를 통해 능참봉직이 후손에 의해 세습되는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해평부원군 종가의 고문서를 다룬 연구물에 정운희의 4대손 鄭匡魯, 정광노의 손자 鄭夔錫에게 내린 사릉 참봉 임명장이 실려 있어 능참봉직의 세습 정황이 쉽게 파악된다. 『忠을 다하고 德을 쌓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234쪽 도118 참조.

를 갖추고 있지 못해서 여러 서적을 참고하고 고적을 직접 답사한 끝에 『광릉지』를 완성했다고 한다.³⁷⁾

김종선은 능지를 유에 따라 분류하면서 4권으로 편집했는데, 권1에서는 옥책문과 상설 등의 綱領, 권2에서는 寢殿과 齋舍 등의 節目·광릉의 능력과 謠俗·陵司와 屬率, 권3에서는 역대 국왕의 行幸과 御製·제사 규범·능침 관리 준칙, 권4에서는 국왕으로부터의 受教와 각종 규식에 관한 내용으로 분류하였다. 김종선의 서문 뒤로 광릉지를 작성하며 인용한 33종의 서적명을 적어놓았고, 그 뒤로 목록을 작성해놓았다. 능지에 있는 목록은 다음과 같다.

光陵誌目錄

<권1> 山陵, 玉牒, 象設.

<권2> 寢殿, 鋪陳, 器皿, 香炭, 齋舍, 火巢, 山川, 故蹟, 官員, 員役, 軍丁, 復戶.

<권3> 幸行, 璇題, 祀典, 焚香, 奉審, 灑掃, 修補, 巡山.

<권4> 受教, 禁制, 公式, 文狀, 官規.³⁸⁾

3.11 敬陵誌(德宗·昭惠王后)

3.11.1 敬陵誌

- 朴弼俊 編(1717년, 숙종 43), 사본 2책(136장), 장서각(K2-4412·4413) 소장.

성종에 의해 추존된 德宗과 昭惠王后 韓氏(후의 仁粹大妃)의 능침인 경릉

35) 李顯箕는 1728년(영조 4) 광릉 참봉에 임명된 바 있다. 『승정원일기』 영조 4년(1728) 10월 2일조.

36) 尹鑑은 1792년(정조 16) 광릉 참봉에 임명된 바 있다. 『승정원일기』 정조 16년(1792) 9월 11일조.

37) 이현규와 김종선의 서문은 김동석·이태희 역주, 『譯註 光陵誌』(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20-23 참조.

38) 권4 말미에 李王職 禮式課의 시달로 당시 광릉 참봉이었던 조동철이 1936년 등사를 완료했다는 기록이 명시되어 있다. “以上光陵志上下二卷, 昭和十年九月十八日, 禮式課示達奉准謄寫, 而昭和十一年二月十六日告竣, 參奉趙東喆記.”

관련 기록을 모아 엮은 것으로, 경릉 참봉을 지낸 朴弼俊이 1717년(숙종 43)에 편찬한 능지이다.

K2-4413 말미의 朴弼俊의 題에 의하면 朴弼俊이 1714년(숙종 40)에 경릉 참봉에 제수된 뒤 전임 참봉 黃順承이 모아놓은 능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다른 능의 儀式과 예조의 典例를 두루 모아 1책의 능지를 만들었다고 한다. 능지를 엮은 목적은 경릉의 事蹟을 드러내고 前例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삼기 위해서였으며, 編輯을 완료한 시점은 임기가 거의 끝나가던 1717년(숙종 43) 6월이었다. 朴弼俊의 제사 뒤로 후임 능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이어지고, 1885년(고종 22)에 작성한 K2-4412 말미의 朴應漢의 『題詠』이 가장 늦은 시기의 기록인 것으로 보아 19세기 말엽에 이 능지가 최종 정리된 것으로 여겨진다.

『경릉지』는 현재 K2-4412·4413 두 책으로 나뉘어져 있고 능지를 작성한 필치도 서로 다른데, 그 내용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K2-4413에 있는 朴弼俊의 제사 뒤로 후임 능관이 작성한 영조대의 기록이 이어지고, K2-4412 말미에 정조와 고종대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볼 때 K2-4413본이 먼저 작성되고 이를 토대로 K2-4412이 轉寫·追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K2-4413본이 朴弼俊에 의해 편집된 원본이고, K2-4412본이 후대에 전사 및 추보된 것으로 여겨진다.

<K2-4412의 목록>

敬陵寒食祭祀式, 大王陵圖 등 5종의 圖式, 壬寅三月十二日追記,³⁹⁾ 象設,⁴⁰⁾ 大王誌文과 仁粹王妃封崇冊文을 포함한 20종의 위계문자, 陵祭規例, 正廟朝御製 및 諸臣賡韻(1798년),⁴¹⁾ 題詠(1885),⁴²⁾ 齋舍所藏書冊目錄.⁴³⁾

39) “壬寅三月十二日追記”는 1755년(영조 31) 2월부터 3월까지 있었던 비각과 표석을 세우는 일과 관련된 일지를 간단히 적은 뒤, 비각의 위치와 비석의 크기를 임인년 3월 12일에 추가로 기록한 것이다. 임인년은 1782년(정조 6) 또는 1842년(헌종 8) 또는 1902년(광무 6)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추가의 글씨가 K2-4412 말미에 실린 것으로 1865년(고종 2) 이후에 작성된 『齋舍所藏書冊目錄』과 필치가 유사한 것으로 보아 1902년(광무 6)에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40) 경릉은 한 능역에 정자각을 좌우로 왕과 왕후를 모시는 同原異岡 형식의 능으로, 왕의 봉분을 오른쪽에 모시고 왕후의 봉분을 왼쪽에 모시는 ‘右上左下’의 일반적 원칙을 벗어나 왕을 왼쪽 언덕에 왕후를 오른쪽 언덕에 모신 유일한 왕릉으로 알려져 있다. 능지에도 大王陵 밑에 ‘左崗’, 王后陵 밑에 ‘右崗’이라고 명기하여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준다.

<K2-4413의 목록>

大王誌文⁴⁴⁾부터 追崇時奏請顛末까지 18종의 의례문자, 陵祭規例(祭官分排之規에서 莎草種子摘置事目까지 31건의 규례),⁴⁵⁾ 受教, 尊先生之規, 表石 거행 관련일지(1755년), 朴弼俊 題(1717년), 南得寬記,⁴⁶⁾ 兩陵上象設及丁字閣紅箭門尺數(1732년), 香炭山冒葬查實報狀書目(1741년), 本陵令書目(1742년).

3.11.2 敬陵誌

- 朴弼俊 編(1717년, 숙종 43), 李王職 寫, 사본 1책(94장), 국립문화재연구소(文 K2-4414) 소장.

성종에 의해 추존된 德宗과 昭惠王后 韓氏(후의 仁粹大妃)의 능침인 경릉 관련 기록을 모아 엮은 것으로, 경릉 참봉을 지낸 朴弼俊이 1717년(숙종 43)에 편찬한 능지(K2-4412·4413)를 이왕직 때 轉寫한 것이다. 내용은 K2-4412·4413본

-
- 41) 정조가 덕종의 五回甲과 태조의 八回甲을 맞아 경릉에 제사를 거행하고 지은 御製와 이에 대한 제신들의 聯句로, 성균관 대사성 李始源이 1798년(정조 22) 8월 29일 정조의 명을 받고 썼다는 후기가 있다. 정조의 어제와 제신의 갯은 『弘齋全書』 권7에 「德廟五回甲戊午仲秋 祇謁敬陵行祭 謹疊桓廟八回甲志慶聯韻 奉揭齋舍」란 제목으로 실려 있다.
 - 42) 「題詠」은 崔淑精(1435~1480)의 칠언율시로, 그가 懿墓(지금의 경릉)의 典祀로 있을 때 제사의 벽 위에 쓴 시라고 전한다. 최숙정의 외손 朴應漢(1835~1904)이 1885년(고종 22) 경릉 관련 고적에서 찾아내 최숙정의 시를 적은 뒤 그 뒤에 차운하였다. 최숙정의 시는 그의 문집 『逍遙齋集』 권1에 「題懿敬世子墓齋壁」이란 제목으로 실려 있다.
 - 43) 「齋舍所藏書冊目錄」은 필자 임의로 붙인 제목으로, 경릉의 각종 祀典 및 능침 관리와 관련하여 경릉 제사에서 대대로 소장해온 것으로 여겨지는 서책 12건의 목록이 적혀있다. 목록 안에 들어있는 『大典會通』의 간행 시기로 볼 때 이 목록은 1865년(고종 2)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 44) 「大王誌文」은 앞부분의 내용이 결락되어 있다. 「大王誌文」부터 이하 「追崇時奏請顛末」까지는 K2-4412에도 동일하게 실려 있다. 다만 K2-4412에는 「碑文前後面」 뒤에 있는 「封王世子粹嬪正文」이 K2-4413에는 「封王世子粹嬪敎命文」 뒤에 실려 있다. K2-4412에 실린 「碑文前後面」이 K2-4413에는 빠져있다.
 - 45) 「參奉奉審之規」로부터 「莎草種子摘置事目」까지 26건의 규례는 K2-4412에는 없는 것으로 K2-4413에만 추가되었다. 반면 K2-4412에 있는 「行祭節目次序」로부터 「先告還安祭笏記」까지 6건의 규례는 K2-4413에는 빠져있다.
 - 46) 南得寬은 1732년(영조 8)에 경릉 참봉에 임명되었다. 『승정원일기』 영조 8년(1732) 윤5월 29일조.

과 동일하며, K2-4413의 내용을 앞에 신고 K2-4412의 내용을 뒤에 실었다.

3.12 昌陵誌(睿宗·安順王后)

3.12.1 昌陵誌

- 具悌元 編(1796년, 정조 20), 사본 2책(214장), 장서각(K2-4487·4488) 소장.

조선 제8대 왕인睿宗(1450~1469)과 계비 安順王后 韓氏(1445~1498)의 능침인 창릉 관련 기록을 모아 엮은 것으로, 창릉 참봉으로 있던 具悌元이 1796년(정조 20)에 편찬한 능지이다.

『창릉지』는 상편(K2-4487)과 하편(K2-4488)으로 구분되어 있다. 상편 첫머리에는 창릉 참봉을 지낸 李德容이 1765년(영조 41)에 기록한 『昌陵瞻錄序』가 있다. 이에 따르면 이덕용이 舊瞻錄을 기반으로 규례와 절목을 새로 정하여 『창릉등록』을 새로 편집했다는 내용이 있다.

『창릉등록서』 뒤로는 역시 창릉 참봉을 지낸 구제원이 1796년(정조 20)에 쓴 『昌陵誌跋』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이덕용의 『창릉등록』이 범례가 일정하지 않고 목록이 난잡한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齋中의 故事를 보충하여 總目을 만들고 이를 다시 유별로 小目으로 나누어 補編했다는 내용이 있다.

위의 두 서·발에 근거할 때 『창릉지』가 애초에는 『창릉등록』으로 펴냈다가 1796년(정조 20)에 이르러 현재의 『창릉지』로 재편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창릉지』 끝부분의 『補遺』는 창릉 능상의 석물을 수개할 곳을 별단으로 써서 예조에서 내려 보낸 글로, 정조 21년(1797) 2월 13일에 작성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창릉지』는 1797년(정조 21)에 최종 편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⁴⁷⁾

능지 앞부분에 목록을 작성해 놓았다. 상편은 12항목, 하편은 6항목으로 분류

47) 『창릉지』에 관해서는 유지복, “『창릉지』의 구성과 기록물로서의 가치,” 『譯註 昌陵誌』(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10-28 참조.

하고 각 항목마다 작은 항목을 두었다. 하편 뒤에는 『창릉지』가 최종 편간된 1797년(정조 21) 이후에 작성된 후임 능 참봉들의 追錄이 있다. 목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上編> 圖式, 儀軌文字, 陵殿, 祭享, 陵幸, 奉審, 禁養, 折受, 文牒規式, 任官, 守護軍, 傳掌.

<下編> 瞻錄(碑文, 祭享, 修改, 禁養, 守護軍, 補遺).

3.12.2 昌陵誌

- 李王職 寫, 사본 1책(143장), 장서각(K2-4486) 소장.

이왕직에서 능원묘의 일괄조사 때 작성한 능지로, 『창릉지』(장서각 K2-4487·4488)를 옮겨 베낀 것이다. 내용은 K2-4487·4488과 동일하나 후임 능참봉들에 의해 작성된 추록은 없다.

3.12.3 昌陵誌:附局圖

- 사본 1책(18장), 장서각(K2-4489) 소장.

『昌陵誌:附局圖』(K2-4489)에는 『창릉지』 중 능역의 지도를 그린 「圖局」과 陵殿 조에 실린 「山陵」 및 儀軌文字 조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모두 『창릉지』 상편(K2-4487)의 일부 내용을 그대로 필사한 것이다. 첫 면에 실린 圖局의 경우 K2-4487에 실린 그림과 기본 형태는 동일하나 각 위치에 대한 묘사 및 표기 방식이 K2-4487에 비해 정치함이 떨어져 후대에 필사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글씨 및 기록 방식이 K2-4487·4488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창릉지』가 최종 편간된 1797년(정조 21) 이후의 가까운 시기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13 宣靖陵誌(成宗·貞顯王后, 中宗)

- 金宗壽(1802년, 순조 2)·嚴錫鼎(1802년, 순조 2) 編, 李王職(李洪九, 1936년) 寫, 사본 1책(139장), 국립문화재연구소(文K2-4437) 소장.

『宣靖陵誌』는 成宗과 계비 貞顯王后의 宣陵, 그리고 中宗의 靖陵에 관한 기록을 모아놓은 능지로, 1802년(순조 2) 선릉 직장 金宗壽⁴⁸⁾가 편찬한 『선릉지』와 1835년(헌종 1) 정릉 참봉 嚴錫鼎(1801~1875)⁴⁹⁾이 편찬한 『정릉지』를 합쳐 1936년 이왕직 때 선릉 참봉으로 있던 李洪九가 전사한 것이다. 『선릉지』와 『정릉지』가 언제, 그리고 어떤 경위로 『선정릉지』로 합쳐져 전해지게 되었는지는 자세하지 않으나, 능지 안에 수록된 金宗壽의 『宣陵瞻錄序』와 嚴錫鼎의 『靖陵誌跋』을 통해 순조·헌종 연간에 『선릉지』와 『정릉지』가 각각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릉등록서』에 의하면 『선릉등록』은 金宗壽가 1801년(순조 1) 선릉 참봉으로 오기 100여 년 전에 전임이었던 南平公이란 사람이 엮어낸 등록이다. 金宗壽의 말에 따르면 등록의 절목이 무척 상세했지만, 享祀儀節과 入直式例에 관한 내용은 실려 있지 않아 신임승관이 의거할 바가 없었다고 한다. 이에 선릉에서 그간 행한 규례를 모으고 『獻陵誌』와 『靖陵誌』를 참고하되, 각항의 절목은 『선릉등록』을 그대로 따르고 享祀焚香의 절차와 入直守護의 법식을 포함하여 移關報牒의 규식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기록하여 능지를 완성하였다고 한다. 서문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金宗壽가 능지를 補編하던 당시까지도 능지명은 전례를 따라 ‘선릉등록’을 고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엄석정의 『정릉지跋』에 따르면 『정릉지』는 전임 참봉이었던 李昇圭가 40년 전(1795년경)에 만든 것이 시초라고 한다. 이승규가 『정릉지』에 수록한 내용은

48) 金宗壽의 능지 서문에는 그가 한 해 전인 1801년(순조 1)에 선릉에 왔다고 써어있고 직함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승정원일기』 순조 2년(1802) 5월 1일 선릉 直長에 임명한 기사에 의거해 볼 때 처음에는 참봉으로 왔다가 이듬해 5월에 직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추정된다.

49) 『승정원일기』 순조 33년(1833) 6월 22일조에 엄석정을 정릉 참봉에 임명한 기사가 나온다.

誌文, 諡冊, 哀冊, 遷陵之蹟, 倭寇之變, 祀享之儀節, 事倒之條目 등으로 거의 모든 것을 구비하였다고 한다. 다만 능지가 많이 손상되어 장차 닳아 없어질까 염려한 나머지 선릉과 정릉의 등록을 가져다 상호 비교하여 교정하고, 번다한 부분은 줄이고 간략한 부분은 보충하여 3개월 만에 능지를 완성하였다고 한다. 발문 말미에 엄석정이 교우인 선릉 참봉 李彙載(1795~1875)에게 서문을 받아 맨 앞에 실었다고 했는데 현존하는 『선정릉지』에는 없다.

능지 맨 끝의 부록 뒤로 엄석정의 발문 외에 후임 참봉 金在喆의 글(1904년, 광무 8)을 포함한 후기 4편이 실려 있어 이 능지가 광무연간에 최종 정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선릉지』와 『정릉지』의 끝 부분, 그리고 김재철의 후기 뒤에 동일하게 선정릉 참봉 李洪九의 謄寫記가 “소화 11년 3월 9일 등사인 본 능 참봉 이홍구 [昭和十一年三月九日謄寫人本陵參奉李洪九.]”라는 내용으로 실려 있는 점이 다른 능지에 비해 색다르다. 또한 『宣陵誌狀』으로부터 『表石』에 이르기까지 『선릉지』 앞부분에 해당하는 13건의 冊文 등이 후대 전사 과정의 오류로 인해 『정릉지』 말미에 놓여있다.

『선릉지』 목록은 능지 앞부분에 별도로 작성해놓았으나 실제 수록된 내용 및 순서와 맞지 않는 경우가 다소 있으며, 『정릉지』 목록은 아예 따로 없다. 능지에 실린 내용과 순서를 기준으로 『선정릉지』의 목록을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宣陵謄錄序(金宗壽, 1802년)

<선릉지 목록>

兩陵上象設圖 외 5종의 圖式, 祀典 외 11종의 제향 규례, 中使摘奸時節目 외 16종의 奉審·禁養·折受 관련 조목, 正朝祭享後獻官書啓之規 외 20종의 문첩규식.⁵⁰⁾

<정릉지 목록>

靖陵誌狀 외 3종의 의례문자, 遷陵事實, 陵變始末, 象設圖 외 5종의 圖式, 祀典 외 11종의 제향 규례, 中使摘奸時節目 외 21종의 奉審·禁養·折受 관련 조목, 正朝祭享後獻官書啓之規 외 6종의 문첩규식, 附錄(順懷廟事蹟, 奉恩寺事蹟, 古梅山館記), 謹題陵誌下(趙亨采), 靖陵誌跋(嚴錫鼎),⁵¹⁾ 後記(柳

50) 말미에 宣靖陵參奉 李洪九의 謄寫記 “昭和十一年三月九日謄寫人本陵參奉李洪九”라는 내용이 있다.

鎬,⁵²⁾ 黃圭琮, 金在喆), 宣陵誌狀와 貞顯王后尹氏誌文 등 13종의 의궤문자, 陵變始末,⁵³⁾ 後記(宋以用, 1896년).

4. 맺음말

능지는 왕릉을 지키고 제사를 치를 때의 절차와 능의 운영에 관련된 규례를 기록해놓은 것으로, 왕릉 수호와 제사 담당이 주요 임무였던 능관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지침서였다. 대부분 능참봉에 의해 작성된 능지는 후임 참봉들에 의해 능과 관련한 기록이 꾸준히 이어졌다. 왕릉의 말단 관리였던 참봉은 능역 안에 있는 재실에서 숙직하는 동안 5일 간격으로 왕과 왕비가 잠든 능침을 살펴보고, 주변의 정자각과 비각 등 주요 건물을 둘러보며 흙이 없는지 살펴보았다. 사철마다 특별히 능역을 살펴보는 봉심, 기신제 및 절기마다 지내는 제사, 일이 있을 때마다 지내는 고유제, 능상에 보수할 곳과 변경이 생길 때 지내는 환안제·위안제 등 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였다. 뿐만 아니라 능 일대를 둘러싼 산과 능의 경계인 화소 안팎을 지키는 일을 맡은 능군을 일일이 감독 또는 보호하며 그때그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상부기관인 예조에 보고하여 처분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처럼 능참봉이 처리하거나 보고했던 모든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이 바로 능지이다.

현재 52종의 능지가 남아있다. 대부분 18세기 말에서 19세기 말에 작성된 것이다. 편찬시기가 가장 일러야 18세기 초반으로, 그 이전에 편찬된 능지로 현재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나마 52종 가운데 이왕직 전사본이 32종 남아있는 것이 다행일 지경이다. 『제릉지』 등의 능지에 이왕직 예식과의 훈령에 따라 능지

51) 『승정원일기』 순조 33년(1833) 6월 22일조에 嚴錫鼎이 정릉 참봉에 임명된 기사가 실려 있음.

52) 『승정원일기』 고종 15년(1878) 6월 21일조에 柳止鎬가 정릉 령에 제수된 기사가 실려 있음.

53) 『陵變始末』은 정릉지 목록에 있는 『陵變始末』과 동일한 내용이 중복 등사되어 있다. 말미의 “辛巳二月十一日畢”이라는 간기가 적혀있는 점이 다를 뿐이다.

를 베껴 썼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현존하는 이왕직 전용 용지에 쓰인 전사본은 대부분 1935년에서 1936년 사이에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시에 분명 원본을 보고 베꼈을 터인데 전사본만 남아있어 상당한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왕직 자료가 이관되던 당시의 경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능지는 능을 지키는 관리였던 능참봉이 현장에서 직접 남긴 기록이라는 점에서 왕릉의 운영과 관련한 상당히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이들의 기록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왕릉이 변천되어 온 배경을 알려줄 뿐 아니라, 현재의 왕릉 문화 보호정책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줄 만큼 실질적이고 풍부한 내용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사료적인 측면에서는 『조선왕조실록』이나 『선원보략』의 전거가 되었을 정도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

현재 학계에서는 왕릉 문화와 관련하여 의궤와 등록 등 국가적 차원에서 작성된 왕실 기록에 관한 연구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반면, 능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집중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능지의 본격적 연구를 통해 당시 능관의 직임 및 관리 구조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능의 일을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능관, 수호군 등에 대한 인적 구조 및 관계망을 파악해 나간다면 왕릉 문화를 구현하는 기록물로서 능지가 지닌 가치가 더욱 드러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이순. “昌陵의 왕과 왕후 능의 위치 再考.” 『美術史學研究』 第267號(2010). 49-76.
- 윤 정. “18세기 ‘단종제신’ 포장의 확대와 ‘生六臣’의 성립.” 『역사문화연구』 제36집(2010). 41-77.
- 李根浩. “16~18세기 ‘단종복위운동’ 참여자의 복권 과정 연구.” 『史學研究』 第83號(2006). 115-155.
- 이현진. “조선후기 단종 복위와 충신 현창.” 『史學研究』 第98號(2010). 41-89.

崔志善. “조선시대 왕릉 관련 문헌의 서지적 연구.” 碩士學位論文.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2007.

장서각 편, 김덕수 역주. 『譯註 獻陵誌』.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장서각 편, 김덕수 역주. 『譯註 莊陵誌續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1.

장서각 편, 김동석·이태희 역주. 『譯註 光陵誌』.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2.

장서각 편, 유지복 역주. 『譯註 昌陵誌』.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3.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보고서(Ⅰ)』.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보고서(Ⅱ)』.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보고서(Ⅲ)』.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2.